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13

2015년 6월 29일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5년 6월 9일, 문영민 의원

나. 회부일자 : 2015년 6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15년 6월 29일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문영민 의원)

가. 제안이유

○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0년 8월 31일자로 시·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전·현임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동 조례의 경우 그 제정 목적이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폐지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가.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5년 6월 9일 문영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호로 발의되어 2015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청의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었음에도 현행 조례에 따르면 교육의정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현실에 부합하도록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주요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의 설립 배경 및 활동내역

○ 사단법인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이하 “교육의정회‘라 한다)는 지난 2001년 7월 14일 교육에 관한 정책·학술연구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은 전·현직 서울특별시교육위원으로 구성되며, 그동안 서울특별시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 및 환경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회보 및 이에 준하는 간행물 발간 등의 활동을 해온 바 있습니다.

○ 한편 회원 총수는 77명으로 정관상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과 2명의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4년 2~3월 모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실질적으로는 임원이 공석인 상태입니다.[1)]

○ 또한 2013년 이후에는 의정회가 발간하던 '의정회보'나 여타 자료발간 사업이 모두 중단되었고, 2014년부터는 별도 공익사업이나 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무직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현황

○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육의정회 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2)](이하 '교육의정회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3)] 및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5천 3백만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매년 4천 8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 의정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일체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4)]

---

1) 임원 14명 중 이사장과 이사 6명, 감사 1명은 2014년 2월로, 이사 5명과 감사 1명은 2014년 3월로 임기가 만료되었음.

2) 교육의정회 관련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서울시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조례임.

3)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②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교육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교육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4)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대한 조례 무효소송'에서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현행 제17조제1항)을 근거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혹은 기타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고 판단하였으며, 2007년 감사원은 '서울특별시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관내 1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정회 관련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의정회 보조금 지급 규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음(「감사결과 처분요구서-행정자치부 기관운영감사」 2007. 7. pp 36-37).

○ 또한 현재 교육의정회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4층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2014년도를 기준으로 사무실 임대료 미납액이 3,070,510원이고 2015년 현재 교육의정회는 동 시설을 별도의 사용허가요청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설 무단점유에 대해 교육의정회를 상대로 2014년에 10회에 걸친 미납 사용료 납부 독촉을 하였으며, 2015년에도 3회에 걸쳐 사무실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 통보와 퇴거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교육의정회로부터의 별도의 답신은 없는 상황입니다.

3. 교육의정회 조례의 비합치성

○ 현행 교육의정회 조례 제1조에 따르면 교육의정회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의 교육·학예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5]의 개정으로 인한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2010년 9월 1일자로 폐지되었는바, 현행 교육의정회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한 교육의정회 조례 제2조가 교육의정회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전임교육위원 및 현임교육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임 교육위원의 경우는 이미 2010년 9월 이후에는 선출하지 않게

5) 법률 제8069호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후부터 새로이 선출되는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두고,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육의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되도록 변경됨.

되어 향후에도 신규 구성원은 배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더욱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 및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교육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위법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교육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도 삭제가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동 조례를 유지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고 담당부서인 행정관리담당관에서도 동 폐지조례안에 대해 “적정”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_5247(2015.06.16.)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